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하 “가맹점”이라 한다)과 갤럭시아머니트리(주)(이하 “회사”라 한다)는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이하 “빌게이트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는 모든 결제수단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일반조항”과 결제수단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달리 기재한 “특약조항”으로 구성된다.

**- 일 반 조 항 -**

**제 1 조 [ 목적 ]**

본 계약의 목적은 “가맹점”이 고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빌게이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가맹점”과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본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빌게이트 서비스 :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급결제정보(또는 거래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급결제정보(또는 거래정보) :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2자리, 승인(인증)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3. 결제기관 : 고객이 제시한 지급결제정보(또는 거래정보)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결제를 승인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결제수단에 따라 통신과금사업자, 신용카드업자, 은행,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등을 말한다.
4. 정산대상금액 :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고객이 “빌게이트 서비스”를 통해 결제한 금액 중 결제수단 또는 정산방법에 따라 승인금액, 매입금액, 수납금액 등을 말한다.
5. 서비스수수료 : “가맹점”이 “회사”에게 지급하는 “빌게이트 서비스” 이용대가를 말한다.
6. 정산지급액 : “정산대상금액”에서 “서비스수수료”를 차감한 뒤 “회사”가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 3 조 [ 가맹점의 의무 ]**.

1. “가맹점”은 고객에게 빌게이트 서비스 개통요청서에 기재한 상품 또는 서비스만을 제공해야 하며 개통요청서에 기재한 URL에서만 “빌게이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정보가 다를 경우 서비스 중지 또는 정산 보류될 수 있다
2. “가맹점”은 “회사”에게 “빌게이트 서비스”의 이용대가인 “서비스수수료”를 지급한다.
3. “가맹점”은 빌게이트 서비스 개통요청서상의 기재 내용 기타 회사의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정산지급액” 지급일 7영업일 전까지 빌게이트 서비스 변경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이 부담한다.
4. “가맹점”은 고객지원 및 고객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고객의 클레임, 비정상 거래, 취소∙환불 요청은 “가맹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5. “가맹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기관의 규제사항, “결제기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6. “가맹점”또는“가맹점”의 대표이사가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맹점”은 즉시 해당 내용을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7. “가맹점”은 이용자의 신용카드거래 등의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8. 계약 시 체결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디지털” 혹은 “실물”)이 명확하게 제공 되어야 하며, 실제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유형을 상이하게 거래를 발생 시킨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상기 거래로 “가맹점”이 취득한 수수료의 즉시 반환 요청 또는 상계

 ② 상기 거래로 발생된 모든 거래 취소 또는 수수료 인상 (병행 가능)

 ③ 본 조 1,2호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제 4 조 [ 회사의 의무 ]**

1. “회사”는 “가맹점”에게 “빌게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산대상금액” 및 “서비스수수료”를 정산하여 “정산지급액”을 지급한다.
2. “회사”는 고객이 제시한 “지급결제정보(또는 거래정보)”를 결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3. “회사”는 “결제기관”과의 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결제기관”의 정책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빌게이트 서비스”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 적용 20일 전까지 “가맹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4.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관청의 규제사항, 결제기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 빌게이트 서비스의 제공 ]**

1. “회사”는 “가맹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빌게이트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제기관”의 사정에 따라 “빌게이트 서비스” 사용가능 시간을 달리하는 결제수단은 예외로 한다.
2.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유지보수 등 업무상 ∙ 기술상의 이유로 “빌게이트 서비스” 제공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사전 통지하여 “빌게이트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3.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결제기관”의 사정 기타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빌게이트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회사”는 확인 즉시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와 “빌게이트 서비스” 재개시간 등을 “가맹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빌게이트 서비스”의 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장애발생일 전 90일 간 동 시간대 평균 “정산대상금액”을 산출하여 이에 대한 “회사”의 “서비스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가맹점”의 손해 및 배상금액을 정한다.
5. 가맹점의 불법행위나 사행성조장 및 도박, 폭력, 마약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품목의 취급으로 결제사고가 우려되거나 서면 또는 통신을 비롯한 가맹점과의 연락이 두절될 경우에는 “빌게이트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다.

**제 6 조 [ 정산 ]**

1. “회사”는 “서비스 개통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결제수단별 “정산대상금액”과 “서비스수수료”를 정산하여 “가맹점”에게 “정산지급액”을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도래하는 첫 영업 일에 지급한다.
2. “회사”는 “가맹점”에게 지급월에 “서비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3. “가맹점”은 사전 통지 없이 “빌게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정산지급액”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

1. “회사”는 “결제기관”의 사유(“정산대상금액”의 입금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로 “가맹점”에게 “정산지급액”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가맹점”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거래 취소 및 기타 차감 금액에 대해 “가맹점”에게 지급할

다음 정산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가맹점”은 “회사”가 별도로 지정한 방법으로 상환해야 한다.

1. “가맹점”이 “빌게이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한 거래 취소 건에 대하여 “회사”는 수수료를 환불 한다. 다만, 부칙으로 정해진 지불수단 중 취소 시 수수료 환불이 불가함을 사전 고지한 경우는 제외된다.
2. “가맹점”과 “회사”가 약정한 정산주기에 따라 지급할 “정산지급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차회”정산지급액”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 고객보호의무, 비정상 거래의 책임 및 제재 ]**

1. “회사”는 고객의 클레임 유형, 클레임 제기 빈도, “가맹점”의 클레임 처리 방법 등을 분석하여 “가맹점”의 제3조 4항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본조 제3항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비정상거래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가맹점”이 제3조 1항, 5항, 8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거래
4. “가맹점”이 고객을 오인하게 하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결제정보

(또는 거래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법 ∙ 부당한 행위로 발생시킨 거래

1. “가맹점”이 위법한 상품 ∙ 서비스의 공급, 현금융통, 불법대출 등

사회질서 ∙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발생시킨 거래

1. 고객이 분실, 도난, 위변조, 허위발급, 도용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한 거래(사기, 스미싱, 피싱, 파밍, 대출 등) 및 제휴사 강제취소 거래
2. “가맹점”의 서비스 제공불가에 따른 고객 이의 제기 시 취소 된 거래 건
3.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정상거래 발생시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빌게이트 서비스”의 제공 중단 또는 해당 “가맹점”의 결제를 차단하고 신규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5. “특약조항”의 “서비스수수료” 또는 정산방법, “회사”의 “가맹점”에 대한 RM 정책(Risk Management 정책)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비정상거래 발생의 경우는 인증 방식을 SMS에서 ARS로 전환할 수 있다. (추가 인증비 발생)
6. “가맹점”의 정산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 조치할 수 있으며 월 사용 가능 한도가 축소 될 수 있다.
7. ”회사 또는 결제기관에서 비정상 거래로 확인된 해당 거래내역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경우 “가맹점”은 즉시 취소 처리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의 처리가 7일 동안 지연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역을 임의 취소할 수 있다.
8. “회사”는 “가맹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비정상거래로 인한 “회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9. 제3항 ③호에 따라 지급 보류된 “가맹점”의 “정산지급액”과 “회사”의 손해배상액을 상계
10. 손해발생 이후 지급할 “정산지급액”에서 “회사”의 손해배상액을 차감하여 지급
11. 제8조 손해담보물로 “가맹점”이 제공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을 청구 또는 해당 예치금으로 손해액에 충당

1. 해당 손해액의 지급을 청구

**제 8 조 [ 손해담보물의 제공 ]**

1. “가맹점”은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호 약정한 “특약조항”의 기재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본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가맹점”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연장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빌게이트 서비스”의 제공 중지 또는 “정산지급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3. “회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또는 거래금액의 규모에 따라 본 조의 보험가입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제7조 3항의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맹점”이 “회사”의 요청에 응하여 보험 가입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납한 뒤 “정산지급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4. “가맹점”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대신하여 “회사”에게 해당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담보금을 예치할 수 있다.

**제 9 조 [ 계약기간, 계약의 연장, 변경 및 해지 ]**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2. “가맹점”과 “회사”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3. 일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이 이를 시정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15일의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일방에게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신청 또는 그 결정이 있거나 회사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 또는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6. 일방이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처분을 받거나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7.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8.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부속계약서 또는 특약서 등도 동시에 해지된다. 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회사”와 “가맹점”은 각 정산방법 및 정산주기에 따른 정산의무를 완료해야 한다. 단, 계약 종료(또는 타사 이탈) 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처리를 위해 잔여 정산금을 지급보류 할 수 있다

**제 10 조 [ 소유권, 양도 ∙ 임대 ∙ 담보제공의 금지 ]**

1.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한 “빌게이트 서비스”의 모든 구성요소는 “회사”의 소유이며 “가맹점”은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2.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1 조 [ 비밀유지 의무 ]**

“가맹점”과 “회사”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 및 상대방의

정보(“서비스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 12 조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

1. “회사”는 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 및 이용 할 수 있다.
2. “회사”는 “가맹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단, 아래의 각호에 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3. 가맹점의 사전에 동의 한 경우
4.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한 고객상담센터 위탁 운영
5. 감독기관(관공서) 및 수사기관의 요청

**제 13 조 [ 서비스의 적용 ]**

“가맹점”은 아래 각 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이트를 원칙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증보험증권 및 은행질권, 기타 현금담보 등“회사”의 동의 하에 운영이 되어야 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서비스 중지 및 이용제한이 될 수 있다..

[판매금지 상품 목록]

|  |
| --- |
| 담배, 전자담배, 주류(전통주 제외), 성인콘텐츠, 성인용품, 유흥구직, 유흥업소, 미팅, 채팅, 연애, 만남주선, 부적, 회비, 시즌권, 분양권, 회원권, 사행성, 환금성, 대출, 경매, 로또번호, 선불카드, 전화카드, 투자, 주식방송, 다단계, 보험, 중고차, 가품(모조품), 도수있는 안경, 애완동물분양, 무기류, 피규어, 장례서비스, 비트코인 관련상품 등 제휴사 정책에 따라 등록불가 상품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단, 환금성이나 아래 상품은 인증강화 및 결제 제한으로 ‘회사’의

동의 하에 운영 할 수 있다

|  |
| --- |
| 상품권, 기프티콘, 포인트 충전, 게임 아이템, SMS 충전, 웹하드 |

1. 상기 입점 불가 업종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판단 및 제휴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 “회사”는 입점을 거절 한다.
2.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 적용 시 “회사”는 “가맹점”의 정산대금을 보류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3. 모든 결제서비스의 거래에 대하여 인증서비스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서비스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맹점”에 귀속한다.
4. 보증보험 금액에 따라 결제서비스 전체에 대한 통합 한도를 월별로 적용할 수 있으며, 취소 가능 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 만료 후 2주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정산대금을 지급보류 조치 할 수 있다.

**제 14 조 [ 효력, 분쟁의 해결 ]**

1. “일반조항”에서 정한 내용과 “특약조항”에서 정한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 “특약조항”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계약의 내용과 부속계약의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 부속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통신과금서비스\_휴대폰, 폰빌, KT M결제” 특약사항>**

**제 1 조 [ 정의 ]**

1. 월자동결제 : 매월 지정된 일자에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법을 말한다.

1. 본인인증 : 결제수단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일 입력함으로써 “결제기관”으로부터 결제수단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 받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한다.
2. 이의조정 : 수납정산을 정산방법으로 약정한 “가맹점”에 대하여 고객의 환불 요청에 의해 환불된 금액을 차회“정산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절차를 말한다.
3. 청구조정 : 수납정산 이외를 정산방법으로 약정한 “가맹점”에 대해 고객의 취소 요청에 의해 취소된 금액을 차회“정산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재정산 : “가맹점”과 “회사”가 약정한 재정산 시기에 따라 누적된 미수납율과 유보율/미수율을 비교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회“정산지급액”에 더하여 지급하거나 차감하여 지급하는 정산 방법을 말한다.

**제 2 조 [ 고객보호 의무 ]**

1. “가맹점”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KPBIA) 및 유무선전화결제중재센터의 지침과 서비스고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본 계약 “일반조항” 제7조 3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가맹점”은 고객과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유무선전화결제중재

센터에서 정하는 운영비(유무선전화결제중재센터비)를 부담하며 해당

운영비는 “회사”가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정산지급액”에서 매월 차감하여 대납할 수 있고 “가맹점”은 유무선전화결제중재센터에 납부에 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 조 [ 정산 특약사항 ]**

1. “가맹점”의 월별 1회차 수납율이 70% 미만이거나 “가맹점”의 누적수납율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수수료” 또는 정산방법, “회사”의 “가맹점”에 대한 RM 정책(Risk Management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2. “가맹점”의 “정산대상금액”은 “이의조정” 또는 “청구조정”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3. 유보재정산 또는 미수재정산을 정산방법으로 약정한 “가맹점”은 “회사”에게 약정한 재정산 시기까지의 누적된 미수납율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가맹점”은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에게 “가맹점”과 “고객”이 체결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계약상 대금채권의 채권자를 “회사”로 정하는 약정을 “회사”가 가맹점을 대리하여 “고객”과 체결하는 것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다.

**제 4 조 [취소 및 환불]**

* 1. 휴대폰 거래의 경우는 당월 거래에 한해 취소 가능하며, 월이 지난 경우는 “가맹점”에서 환불로 처리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환불로 처리된 경우는 가맹점으로 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 휴대폰 결제서비스 이용조건 ]**

1. LG U+ 휴대폰 결제서비스의 경우 통신사 정책에 따라 직전 6개월 동안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미거래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에 사전고지 없이 결제 차단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특약사항>**

**제 1 조 [ 정의 ]**

1. 취소가능금액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맹점”이 매입 완료된 거래를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1. 부도차감 : 고객이 본인 미사용(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 ∙ 변조, 허위발급, 도용)이나 물품 미배송 등의 이의를 제기하여 “결제기관”이

해당 거래의 결제를 취소한 뒤 “회사”에게 지급할 차회 대금에서 해당

취소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입 :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번호를 부여

받은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에 대해, 그 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회사”에 판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 또는 절차

(승인일 기준 익영업일)

**제 2 조 [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이용조건 ]**

1. “회사”는 “가맹점”의 신용도, 매출유형, 고객의 클레임 제기 빈도 등을 분석하여 “가맹점” RM 정책(Risk Management)을 변경할 수 있다.
2. “취소가능금액”의 부족으로 고객이 요청한 매입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은 “회사”에게 유선,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매입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한 뒤 “가맹점”을 대신하여 매입취소를 할 수 있다.
3. 본 계약의 종료 이후 고객의 이의제기 해결을 위하여 “회사”는 마지막 거래 매입일로부터 180일 이후까지 “일반조항” 제8조 4항에 따른 “가맹점”의 손해담보금의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4. “가맹점”은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지급결제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맹점”에 있다.

1. 게임 가맹점 개별 인증 적용 후 본인 미사용 주장 등의 민원 발생 시

조건 없이 매출을 취소 한다.

6. “회사”는 “가맹점”의 사이트에서 발생한 매출이 결제기관으로부터

비정상 거래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승인 거절되거나, 승인한도가 제한

되는 경우 결제기관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모든 손실 부분을 취소 또는

지급보류 할 수 있다.

7.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에 따라 “전자지급대행하위사업자”의 경우

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 됨에 따라 연 2회(상/하반기)

“서비스 수수료”가 변경 될 수 있다.

**제 3 조 [ 고객의 이의제기 및 부도차감 ]**

1. 고객이 본인 미사용(분실, 도난, 위 ∙ 변조, 허위발급, 도용)이나 서비스 미제공(물품 미배송, 회원제 중단, 계약된 추가 서비스 미이행) 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가맹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2. “가맹점”에게 “정산지급액”의 지급이 완료된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제1항의 이의를 제기하여 “결제기관”이 “회사”에게 “부도차감”을 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차회“정산지급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제2항의 차감액이 부족할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본 계약 “일반조항” 제7조 4항의 방법으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가맹점”이 고객의 결제취소 요청을 회피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고의로 고객의 결제 취소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 “일반조항” 제7조 3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가맹점”의 사업 및 서비스의 유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무 상태가 우려되는 등의 경우, “회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발생된 결제를 취소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로

발생시킨 부도차감에 대해서도 본 계약 “일반조항” 제7조 4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한다.

1. “가맹점”의 서비스 유지 불가로 인한 결제 취소 시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부도차감액을 측정하며, 이를 “회사”의 손실로 판단한다.

**<계좌이체 결제서비스 특약사항>**

**제 1 조 [ 정의 ]**

최저수수료 : 고객의 1회 결제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하일 때 “서비스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결제 건당 일괄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건당 거래금액이 15,000원 미만일 경우 적용한다.

**제 2 조 [ 계좌이체 결제서비스 이용조건 ]**

1. “회사”는 계좌이체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RM 정책(Risk Management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2. 계좌이체 결제서비스에 적용되는 인증수단은 다음과 같으며 인증수단 별 결제한도액은 “결제기관”의 정책에 따른다.
3. 인증수단 : 공인인증 서명, OTP인증, 휴대폰

(휴대폰 인증의 비용 별도 협의)

**제 3 조 [ 고객의 이의제기 ]**

1. 고객이 본인 미사용(계좌정보 ∙ 인증서의 분실, 도난, 위 ∙ 변조,

허위발급, 도용)이나 물품 미배송 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가맹점”이 이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1. 계좌이체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제1항의 이의를 수령한 날로부터 3 영업일 내에 취소 ∙ 환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가맹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을 대신하여 취소 ∙ 환불조치를 이행하고 “가맹점”에게 지급할 “정산지급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1. 제3항의 차감액이 부족할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본 계약 “일반조항” 제7조 4항의 방법으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고객의 취소 ∙ 환불 요청을 회피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고의로 고객의 취소 ∙ 환불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 “일반조항” 제7조 3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 조 [ 취소 및 환불 ]**

1. 고객이 거래의 취소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은 직접 접수 처리하며, 회사에게 취소나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2. 거래의 취소나 환불요청은 180일 이내에 가능하며, 그 이후 요청 건에 대해서는 "가맹점"에서 직접 환불한다

3. 본조 1항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가맹점으로 환급되지 아니한다. 또한, 취소관련 수수료는 가맹점 부담으로 하며, 회사는 이를 가맹점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4. 취소 및 환불 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못 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직접환불 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을 차기 결제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차기 결제대금 부족 시 가맹점은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서비스 특약사항>**

**제 1 조 [ 정의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서비스 : 제3자가 물품 및 용역 대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며, 고객의 물품 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후 “가맹점”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2 조 [ 취소 및 환불 ]**

1. 고객이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서비스를 선택하여 구매 취소 하는 경우, 기본 결제수단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어 가맹점의 부담으로 하며, 거래취소 시 환불하지 아니한다.

2. 고객이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서비스를 선택하여 구매확정을 누를 경우, 환불에 대하여는 가맹점 부담으로 하며, 회사는 이를 가맹점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를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가맹점)**

**주소 :**

**상호명 :**

**대표이사 : (인)**

**(회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오피스빌딩 15층**

**상호명 : 갤럭시아머니트리(주)**

**대표이사 : 신동훈 (인) (법인등록번호 110111 – 1081928)**

1. 정산방법

|  |  |  |  |
| --- | --- | --- | --- |
| 정산방법 | 대상 서비스 | 정산대상금액 | 상세 설명 |
| 수납정산 | 휴대폰 | "가맹점"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결제된 금액 중 "결제기관"으로부터 "회사"에 지급된 금액 | 통신사에 수납된 금액 기준으로 정산해주는 방법(통신사 수납 : 36개월까지 진행됨) |
| 일반 선정산 | 승인금액 (취소금액 제외) | 통신사 수납금액과 관계없이 승인금액 기준으로 정산해주는 방법 |
| 미수재정산 | 승인금액 (취소금액 제외) | “가맹점”과 “회사”가 약정한 재정산율 및재정산주기에 따라 1회에 한해 재정산 |
| 유보재정산 | 승인금액 (취소금액 제외)-유보금 | “가맹점”과 “회사”가 약정한 유보율 및재정산주기에 따라 1회에 한해 재정산 |
| 매입정산 | 신용카드 | 승인 이후 카드사에 청구(매입)되는 금액 | 매입금액 기준으로 정산해주는 방법 |
| 승인정산 | 전 서비스 공통 | 승인금액 (취소금액 제외) | 승인금액 기준으로 정산해주는 방법 |

2. 정산주기

|  |  |  |
| --- | --- | --- |
| 정산주기 | 대상 서비스 | 정산 기준 일자 |
| 일정산 | 전 서비스 공통 | 매일 |
| 주정산 | 월요일~일요일 |
| 익월초정산 | 1일~말일 |
| 익월말정산 |
| 익익월말정산 |

3. 에스크로 정산방법

|  |  |  |  |  |  |
| --- | --- | --- | --- | --- | --- |
| 결제수단 | 정산방법 | 정산주기 | 정산대상금액 | 구분 | 정산지급일 |
| 에스크로(계좌이체, 가상계좌) | 승인정산 | 일정산 | 승인금액(취소금액 제외) | 에스크로 사용 시 | 구매확정+3일 |
| 에스크로 미사용 시 | 승인일+5일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  |
| --- |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1)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계약 시대표자 성명/생년월일/국적,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이메일, 업태, 업종, 계약담당자 성명/부서/직위/연락처/이메일, 기술개발담당자 성명/부서/직위/연락처/이메일, 정산담당자 성명/부서/직위/연락처/이메일, 운영관련 담당자 성명/부서/직위/연락처/이메일, 거래입금계좌번호, 접속IP, 접속 로그, 결제기록2) 전자결제 이용 시 결제자 전화번호, 결제자 생년월일, 성별, 결제자이름, 결제자 가입통신사, 결제승인번호, 상품권번호, 상품권발행사원ID, 결제요청사회원ID, 카드사명, 계좌이체 은행명, 결제결과통보이메일(선택), 결제요청IP(선택), 환불계좌번호, 미납정보, 카드사 민원접수 시3) 홈페이지를 통한 1:1 문의 접수 시등록자성명, 등록자이메일, 회사명, 고객명, 전화번호, 고객이메일**2. 개인정보수집목적**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1)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계약 시결제대금지급, 서비스 제공, 장애 및 공지 알림, 계산서 발행/청구,결제내역조회2) 전자결제 이용 시컨텐츠 구매, 물품구매, 본인인증, 요금결제3) 고객 상담 및 소액결제 미납에 따른 업무 시고객상담업무를 위한 수납 등 요금정산 관련 업무, 소액결제 미납요금에 대한 안내 및 회수 업무 **3. 개인정보보유기간**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1) 부정이용 기록 - 보유 기간 : 1년- 보유 이유 : 부정 이용 방지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유 기간 : 5년- 보유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유 기간 : 5년-보유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 보유 기간 : 5년 (단, 건 별 거래금액 1만원 미만은 1년)- 보유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

|  |
| --- |
| 5)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유 기간 : 3년- 보유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6) 웹사이트 방문기록 보존- 보유 기간 : 3개월- 보유 이유 : 통신비밀보호법**4. 개인정보수집동의거부권리**정보주체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미동의 하신 경우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필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
| --- |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결제수단 사업자(제휴사)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휴대폰 결제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본인인증 및 거래승인, 요금정산을 위한 거래정보전송, 수납 등 요금 정산 관련 업무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용자의 서비스 거래정보(이용상점정보, 상품명, 카드사명, 은행명, 해피머니 아이디, 상품권번호(PIN), 북앤라이프 아이디, 컬쳐랜드 아이디, 상품권번호(PIN), 틴캐시 아이디, 휴대폰번호, 이동통신사정보, KT전화번호, 메가패스 아이디, 카드번호(3rd-마스킹), 카드사정보, 거래금액, 가상계좌번호, 결제정보와 연동된 간편결제 KEY), USER ID, 생년월일(+성별, 내/외국인), 성명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해당 사업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내역 등을 보관(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의 경우 1년, 1만원 초과의 경우 5년)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필수)  |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동의]**

|  |
| --- |
| 1. 회사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고객상담 업무 운영- 위탁 받는 자 (수탁자) : 효성ITX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환불 응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2) 소액결제 미납요금에 따른 업무- 위탁 받는 자 (수탁자) : 나라신용정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소액결제 미납요금에 대한 안내 및 회수 업무-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종료 시 또는 상담 후 폐기 |

|  |
| --- |
| 2. 처리위탁 동의 거부 권리정보주체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가입 및 진행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동의하십니까? (필수)  |

○사업자 정보

|  |  |  |  |
| --- | --- | --- | --- |
| 상호명 |  | MID | 　 |
| 상호명(영문) | 　 | 사업자번호 | 　 |
| 주소 | 　 | 설립일자 | 　 |
| 대표자명 | 　 | 대표자명(영문) | 　 |
| 대표자 생년월일 | 　 | 국적 | 　 |
| URL | 　 | 과세구분 | 　 |
| 업태 | 　 | 업종 | 　 |

○담당자 정보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부서/직위 | 담당자 이름 | 연락처 | 휴대폰 | E-mail |
| 계약 담당자 |  |  |  |  |  |
|  관리자페이지 최초 로그인 시 계약 담당자 이메일로 인증번호 발송됨에 따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
| 정산 담당자 |  |  |  |  |  |
| 개발 담당자 |  |  |  |  |  |
| 고객센터 |  |  |  |  |  |

○정산계좌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통장도장 |  |

○정산 추가 정보

|  |  |  |  |
| --- | --- | --- | --- |
| 초기 설치비 | 원 | 월 관리비 | (면제) |
| 보증보험 / 예치금 | 원 | 중재센터비 | (면제) |

○서비스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서비스 구분 |  |  | 서비스명 |  | 서비스 내용 |  |

- 휴대폰 (이하 “통신과금서비스”라 한다) 수수료 정보 **(SMS 인증비용 20원 “회사"부담)**

|  |  |  |  |  |  |
| --- | --- | --- | --- | --- | --- |
| 결제수단 | 사용여부 | 정산방법 | 정산주기 | 정산지급일 | 수수료(VAT별도) |
| 휴대폰 | **[서비스 구분]** |  |  |  | % |

- 계좌이체, 가상계좌 수수료 정보

|  |  |  |  |  |  |
| --- | --- | --- | --- | --- | --- |
| 결제수단 | 사용여부 | 정산방법 | 정산주기 | 정산지급일 | 수수료(VAT별도) |
| 계좌이체 | **[서비스구분]**  | 승인정산 |  |  | % |
| 가상계좌 | **[서비스구분]** | **[수수료 구분]**\* 수수료 건당 적용 |  |  | 정액제 | 원 |

 - 신용카드 수수료 정보

|  |  |  |  |  |  |
| --- | --- | --- | --- | --- | --- |
| 결제수단 | 사용여부 | 정산방법 | 정산주기 | 정산지급일 | 수수료(VAT별도) |
| 신용카드 | **[서비스구분]** | 승인정산 |  |  | 일반 | % |
| 중소3 | % |
| 중소2 | % |
| 중소1 | % |
| 영세 |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른 ‘고객확인의무’에 따라 관련 정보가 수집 및 처리되며, 동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9에 따라 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해당 정보는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른 이용 및 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며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 정보 (공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호(국문) |  | 상호(영문) |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 법인등록번호 | 개인사업자·단체는 제외 |
| 대표자(국문) |  | 대표자(영문) |  | 대표자 생년월일 |  | 대표자 국적 |  |
| 설립일자 |  | 업종 | 비영리법인·임의단체는 제외 | 사업장대표 연락처 |  | 사업장 소재지 |  |

**2. 실제소유자 정보**

|  |  |
| --- | --- |
| 개인사업자 | **1.가맹점정보에 기재한 대표자와 실제소유자가 일치합니까? 예 □ 아니오 □**‘아니오’인 경우에 아래 칸에 실제소유자를 기재해주세요. |
| 성명(국문) |  | 성명(영문) |  | 국적 |  |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 　 |
| 확인생략대상법인 | **확인생략대상법인의 경우 아래 확인방법 참고** |
| 확인생략대상법인 | 국가 · 지자체 □ | 공공단체 □ | 금융회사 □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 |
| 확인방법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조회 □ |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 조회 □ | 설립목적 또는 영위사업 확인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조회 □ |
| 법인사업자·임의단체 | 확인서류 (택1) | 주주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명부 □ 정관,규약 □ 기타 □ ( ) |
| 실제소유자 구분 | **단계별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여 체크해주세요.**1. **1단계** :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 (자연인) □ 2. **2단계** : 1단계를 확인이 불가한 경우,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25% 미만 보유자 중 최대 지분 소유자 □  ②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  ③ 기타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 3. **3단계** : 1,2 단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
| 실제소유자 정보(전 항목 필수) | 성명(국문) |  | 성명(영문) | 　 | 지분율 | % |
| 생년월일 |  | 국적 | 　 | 연락처 |  |
| **최대 지분을 소유한 자연인이 다수인 경우 아래에 정보 추가 기재** |
| 실제소유자 정보(전 항목 필수) | 성명(국문) |  | 성명(영문) | 　 | 지분율 | % |
| 생년월일 |  | 국적 | 　 | 연락처 |  |
| 실제소유자 정보(전 항목 필수 | 성명(국문) |  | 성명(영문) | 　 | 지분율 | % |
| 생년월일 |  | 국적 | 　 | 연락처 |  |

**3. 고객확인 관련 추가 기재사항**

|  |  |  |
| --- | --- | --- |
| 공통 | 거래목적 | 사업상 거래 □ 기타 □ ( ) |
|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택1) | 사업소득 □ 근로/연금소득 □ 퇴직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상속/증여 □금융소득 □ 기타 □ ( ) |
| 개인사업자 | 본인확인(택1) | □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 ) □ 운전면허증번호 ( ) □ 재외국인용 주민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 신고증 |
| 국내 거주여부 | 거주 □ 비거주 □ |
| 비영리법인·임의단체 | 설립목적 | 학술 □ 종교 □ 자선 □ 문화 □ 교육 □ 사회사업 □ 친족 □ 기타 □ ( ) |
| 확인서류(택1) | 정관 □ 규약 □ 회칙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 인허가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기타 □ ( ) |
| 법인사업자 | 상장여부 | 상장 □ 비상장 □ |
| 상장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뉴욕증권거래소 □ NASDAQ □ 런던증권거래소 □ 기타 □ ( ) |

**4. 대리인 정보 (대리인 작성 시 아래 정보 필수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국문) |  | 성명(영문)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 국적 |  | 주소 |  |
| 관계 | 직원 □ 특수관계인(변호사, 세무사 등) □ 대표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 기타 □ ( ) |
| 첨부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관계서류[위임장(인감 날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

**상기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작성 시 4번 대리인 정보 필수 기재)

20 년 월 일

 상호 : (인)

대리인 : (서명)